



서울특별시 SH공사

수신자 SH센터01~11
(경유)

제목 주거복지단 위임전결사항 알림

1. 관련근거

- 주택관리팀-34호(2015.01.05, 본부장방침 제1호) 『주거복지센터 조직별 업무분장(안)』
- 위임전결내규(2015.07.23.) 개정
- 주택관리팀-5829(2015.12.31, 사장방침 제1207호) 『주거복지센터 조직, 직위 변경(안)』
- 인사운영TF추진팀-2호(2016.1.3.) 『직원 인사발령』
- 주거복지센터 조직 운영 관련 주거복지단장 회의(2016.1.12.)

2. 주거복지단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종전 주거복지단장이 광역센터장을 겸임하던 체제에서 주거복지단장, 광역센터장이 분리됨에 따라 주거복지센터 위임전결 범위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.

가. 사무내용에 따른 결재권자

- 주택관리팀-34호(2015.01.05, 본부장방침 제1호) 『주거복지센터 조직별 업무분장(안)』에 의거 주거복지단장 소속 센터의 ‘센터장’결재 사무를 업무내용에 따른 관련 팀장(2016.1월 현재 부장)이 위임받아 결재처리하던 것은 폐지
- 위임전결내규(2015.07.23.) 별표 4호(붙임1 참조)를 기준으로 결재하되, 결재권자가 ‘광역센터장’인 사무는 ‘주거복지단장’이 결재.
- 향후 위임전결내규 개정시 센터 의견 반영하여 결재 범위 수립 예정.

나. 광역센터의 “부” 역할

- 광역 주거복지센터 소속으로서 업무별(주거복지, 관리운영, 시설운영) 관할 주거복지단 소속 센터의 해당 업무 수합,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하며, 자료관리 총괄은 주거복지총괄부가 주무부서로서 역할 수행.
(단, 광역센터로 지정된 센터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추진)

다. 기타사항

- 광역센터 결재라인 : 부원 → 부장 → 센터장 → 단장 → 본부장 → 사장
- 단장 부재시 직무 대행은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함.

붙임 위임전결내규 별표(개정2015.07.23). 끝.

공 동 체 지 원 부 장

부 원 **김헌태** 공동체지원부장 **출장** 주거복지처장 **서종균** 주거복지본부장 **이종언** 01/14

협조자 부 원 **최광락** 주거복지부장 **박인**

시행 공동체지원부-156 (2016.01.14) 접수 ()
방참번호 본부장 방참 제6호
우 110-78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/ www.i-sh.co.kr
전화 3410-7271 전송 3410-7651 / / 공개